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28
----------	------

2026년 6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 상정일자 :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6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실장 마채숙)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관리 및 운영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다. 위탁기간 : 2년10개월(2027. 3. 1. ~ 2029. 12. 31.)

※ 위탁 종료시점을 회계연도 종료시점과 일치시켜 예산·회계 정산의 효율성 제고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 규 모 : 대지면적 1,551.10㎡, 건축면적 3,472㎡(지상 3층 ~ 지하 1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조리, 제과·제빵, 피부, 헤어, 의상 등), 강당, 상담실, 수영장 등
- 인력현황 : 11명(센터장, 교육팀, 취업팀)
- 위치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금1,184백만원(2026년 예산)

- 인건비 614백만원, 운영비 357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03백만원, 다동이 행복카드 수강료 지원 86백만원, 수상 안전요원 인건비 24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6. 5. 7.)

- 2026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26. 5. 8.통보)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2027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이하 ‘서부여성발전센터’)’ 의 기존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제1항1)에 따라 동 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다시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부여성발전센터 위탁현황>

○ 서부여성발전센터		
수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11.12.01~'14.11.30	(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재위탁(공모)
'14.12.01~'17.11.30	(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재위탁(공모)
'17.12.01~'20.11.30	(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재위탁(공모)
90일 협약 연장(사유 : 2회 공고 결과 응찰자 없어 연장협약 진행)		
'21.03.01~'24.2.29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재위탁(공모)
'24.03.01~'27.2.28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재위탁(공모)

※ (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는'02. 12. 1.부터 '20. 11. 30.까지 운영함
 ※ 직영에서'99.7.부터 민간위탁 시작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검토 의견

가. 재계약 배제 사유가 없음에도 재위탁(공개모집)으로 추진

-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 2023년에 재위탁 방법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현 수탁기관은 특별히 재계약 배제 사유가 없다면 1회에 한해²⁾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집행부서는 재위탁(공개모집) 방식을 택하였음.

<재계약 배제 사유³⁾>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

-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 ③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사 의무 미이행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④, ⑤에 해당하는 기관 여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이와 관련해 집행부서는 재계약 배제사유는 없지만 재위탁(공모) 방식을 통해 복수의 민간 법인들이 참여하여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이라 답변하고 있음⁴⁾.
- ‘재위탁’으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시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관련 행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6.3.) p.59.

4) 2026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26.5. 기회조정실(조직담당관), p.30.

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위탁사무가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임.

나. 신규 위탁기간을 2년 10개월로 추진

- 본 동의안에서는 위탁기간을 2년 10개월로 2027.3.1.~ 2029.12.31.로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서는 위탁기간과 회계연도 종료시점과 일치시키 예산·회계 정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고 있음.
- 그동안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재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 부분 등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기간과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다. 인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기능 중복 해소 및 특성화 전략 마련 필요

- 현재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인접 자치구에는 서울시가 「양성평등기본법」 5)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비 등을

5)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가 밀집해 있음.

<‘서부여성발전센터’와 인접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시설)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조금시설)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재지 : 양천구)	(강서, 구로,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가 설치한 시립 시설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히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 수영장 등 복합시설을 갖추고 있어 취업 지원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등 폭넓은 기능을 수행함.
- 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서울시가 지정하여 민간보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두 센터 간의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그러나 두 센터 모두 여성의 ‘취·창업 지원’이라는 동일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인접 지역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가 위치할 경우 예산과 기능이 분산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집행부서는 향후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재위탁 추진시 인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능 특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 중 하나로 같은 조례 제25조⁶⁾에 따라 ‘여성관련시설의 관리 운영’ 사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제3호⁷⁾ 및 제6조제9호⁸⁾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성 대상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6)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종합의견

- 서부여성발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동 센터와 인접 자치구에 위치한 (강서, 구로,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직업교육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이 상당 부분 유사함.
- 따라서 집행부서는 향후 재위탁 추진시 동 센터가 인근 인력개발센터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기능적 특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728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관리 및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2년10개월(2027. 3. 1. ~ 2029. 12. 31.)
 - ※ 위탁 종료시점을 회계연도 종료시점과 일치시켜 예산·회계 정산의 효율성 제고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취·창업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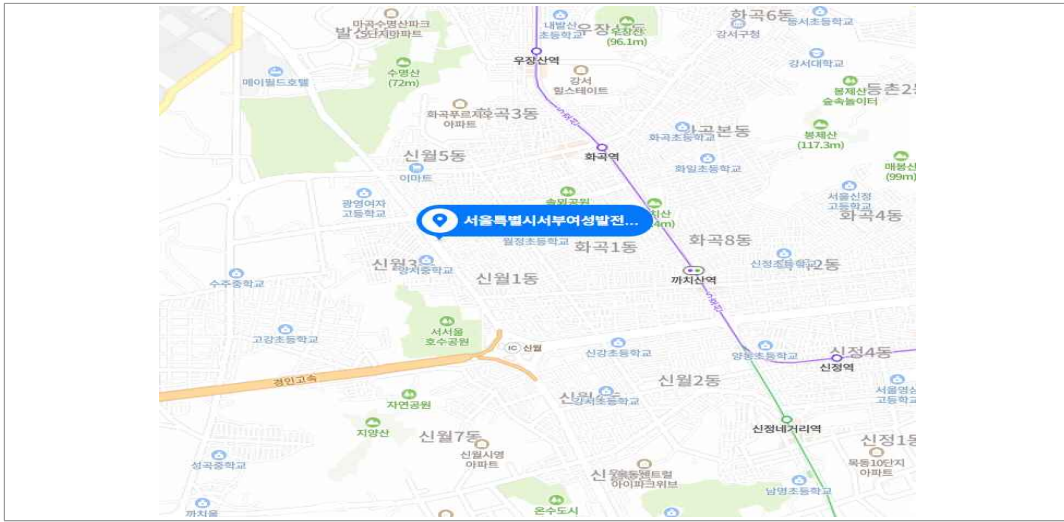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 규 모 : 대지면적 1,551.10㎡, 건축면적 3,472㎡(지상 3층 ~ 지하 1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조리, 제과·제빵, 피부, 헤어, 의상 등), 강당, 상담실, 수영장 등
- 인력현황 : 11명(센터장, 교육팀, 취업팀)

○ 위치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금1,184백만원(2026년 예산)

- 인건비 614백만원, 운영비 357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03백만원, 다동이 행복카드 수강료 지원 86백만원, 수상 안전요원 인건비 24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6. 5. 7.)

- 2026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26. 5. 8.통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7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양혜선 (☎ 2133-5338)